

2020년도 제2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11.(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05건(안건번호 제2020-147972호~14865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47972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의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7973호~14797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0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191건(안건번호 제2020-3288호~3478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35개 안건

은 가결하고, 나머지 5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1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7개 안건(2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오진해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9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8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5쪽의 게시자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자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Tokyo MX', 'CJ엔터테인먼트', '일본 후지TV', '미국 FOX', '일본 NTV', '(주)디스테이션', 'Netflix', '미국 NBC', '미국 CWTV', '미국 LIFETIME'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A, C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60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47972호~14865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797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거 '▲▲▲(▲▲▲▲▲

▲▲▲▲▲)'가 일본 애니메이션 '▲▲ ▲▲▲▲ ▲▲▲▲' 우리말 더빙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전체 분량인 2시간 5분 11초를 우리말 더빙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물 하단에 간접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02. 6. 28.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저작권사는 '▲▲▲▲ ▲▲▲(▲▲▲▲▲▲▲▲▲▲)'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7,150원에 구매 가능하며,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수, 특이사항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4797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이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797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7973호~147974호는 익명의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 ▲▲▲▲ ▲▲▲▲', '▲▲▲▲▲▲'을 유료로 각각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2개의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0-147973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350 포인트에 mkv 파일로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은 2020. 10. 14.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저작권사는 '▲▲▲▲▲(▲▲▲▲▲▲▲▲▲▲▲▲▲▲▲▲)'임.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안전번호 제2020-147974호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380 포인트에 mp4 파일로 판매중임. 해당 저작물은 2005. 2. 8.에 개봉한 미국 영화로서, 저작권사는 '▲▲▲ ▲▲▲▲▲(▲▲▲▲▲▲▲▲▲▲▲▲▲▲▲▲)'임. '카카오페이지'에서 4,950원에 소장, 1,320원에 3일 동안 대여 가능하며, 넷플릭스, 웨이브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의 수, 특이사항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7973호~14797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영화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A 위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7973호~14797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7975호~14865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1,602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포 더 킹(For The King)'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4826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포 더 킹(For The King)'을 110 포인트에 판매함. 웹하드사의 필터링 프로그램을 회피하기 위해 파일에 복호화가 적용되어 있음. 게시물 본문에 '비밀번호 1234'라고 안내하고 있음. 해당 자작물은 2018. 4. 20.에 출시되었으며, 저작권사 'IronOak Games'임. '스팀(SteAm)'에서 20,500원에 구매 가능함.

(영화 '에놀라 홈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48400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에놀라 홈즈'를 360 포인트에 판매중임. 2020. 9. 23.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하였으며, 밀리 바비 브라운, 헨리 카빌, 샘 클라플린 등이 출연함.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설록 홈즈의 여동생 에놀라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추리 모험 영화임.

(음악 'DON'T TOUCH M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2020-148421호는 음악 'DON'T TOUCH ME'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함. '최신곡환불원정대 외 11곡'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0. 10. 10.에 발매하였으며, 2020. 11. 9. 기준 멜론 차트 순위 4위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47975호~14865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A,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47975호~148657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7975호~14865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20-147972호~14865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0쪽부터 2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288호~3478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35개의 안전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나머지 56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1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7개 안전(2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1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